

元代 四等人制의 종족 차별성 재검토*

고명수**

〈차 례〉

1. 머리말
2. 4등인제는 차별 정책인가?
3. 4등급인가? 3등급인가? 2등급인가?
4. 종족 차별인가? 계급 차별인가?
5. 맺음말

【국문초록】

통상 원대 몽골 정부가 모든 주민을 몽골인, 색목인, 한인, 남인으로 구분하고 차별대우하는 4등인제를 시행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그 종족 차별성에 대해 여러 비판이 제기되었다. 우선 4등인제가 신분 등급이 아니라 종족 구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관련 기록을 검토하면 몽골 정부가 관리 등용, 과거,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결과임(NAHF-2022-기획연구-19).

** 충남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형벌, 무기 소지 방면에서 의도적으로 4종족을 차별적으로 대우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종족을 구분하는 경계가 모호하고, 몽골인-색목인, 한인-남인 간 신분 격차가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해당 기록을 분석하면 4종족 사이에 엄연히 신분 격차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4등인제의 실체가 종족 차별이 아니라 계급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인 출신 고위 관원과 몽골·색목인 출신 하층민 사례가 희소하고, 고위층 안에서 몽골인의 지위가 한인보다 높으며, 남인이 근각으로 대우받거나 최고위 관직에 임명되지 못한 사실은 4등인제의 종족 차별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주제어 : 몽골, 4등인제, 색목인, 한인, 남인, 근각

1. 머리말

元代 몽골 정부가 모든 주민을 종족에 따라 蒙古人, 色目人, 漢人, 南人 4등급으로 구분하여 정치·사회·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소위 四等人制를 시행했다고 알려져 있다.¹⁾ 20세기 초 箭內互를 비롯한 일본 연구자들이 이 학설을 제시한 이래 4등인제는 몽골의 신분제도를 대표하는 통설로 자리 잡았고,²⁾ 이후 蒙思明을 위시한 중국 연구자들이 이를 수용하여 더욱 충실하게 보완했다.³⁾

1) 원대 문헌 기록에 신분제도에 관한 명칭이 등장하지 않으므로, 오늘날 연구자들은 四等人制 외에도 四等級制, 四階級制, 民族等級制 등 여러 용어를 사용한다.

2) 箭內互, 「元代社會の三階級」,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3, 1916; 羽田亨, 「元朝の漢文明に對する態度」, 『狩野教授還曆紀念支那學論叢』, 弘文堂, 1928; 愛宕松男, 「元代色目人に關する一考察」, 『蒙古學』 1, 1937; 愛宕松男, 「元朝の對漢人政策」, 『東亞研究所報』 23, 1943.

3) 蒙思明, 『元代社會階級制度』, 哈佛燕京學社, 1938; 丁國范, 「元代的四等人

그러나 근래 여러 연구자들이 4등인제의 성립 배경, 내용, 성격에 관해 몇 가지 이견을 제기했다.⁴⁾ 船田善之는 색목인의 개념, 범주, 그 용어의 출현 배경과 의미의 변천을 광범위하게 고찰한 논문에서 4등인제의 제도적 성격과 종족 차별성을 비판했다.⁵⁾ 또한 劉曉는 원대 司法審判에 반영된 종족 요소를 분석한 논고에서 사법 측면에서 대체로 몽골인의 우월성이 확인되지만 여타 3종족 간 엄밀한 구분·차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4등인제 통설을 비판했다.⁶⁾ 아울러 黃二寧은 4등인제 대신 族群內外制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여 이를 等級制가 아니라 고대 중국의 五服制度의 영향을 받은 內外制로 파악하고, 각 종족의 범주가 끊임없이 변화했음을 강조했다.⁷⁾ 그 외에도 여러 연구자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4등인제 학설에 크고 작은 의문을 제기했다.⁸⁾

制, 『文史知識』 1985-3; 冉守祖, 「從元朝四等級制看民族壓迫的階級實質」, 『中南民族學院學報』 1986-1; 蔡志純, 「元朝民族等級制度形成試探」, 『民族史論叢』 1, 1987; 姚繼榮, 「略論元朝仕進制度中的民族歧視政策」, 『青海社會科學』 1996-3.

- 4) 4등인제에 관한 최근 학설 논쟁에 관해 蔡春娟, 「元朝“四等人制”質疑與新說」, 『中國社會科學報』 2022-02-23 참조.
- 5) 船田善之, 「元朝治下の色目人について」, 『史學雜誌』 108-9, 1999; 「元代の戶籍制度における色目人」, 『史觀』 143, 2000; 「元代“四階級制”說のその後: ‘モンゴル人第一主義’と色目人をめぐって」, 『アジア遊學』 256, 2021.
- 6) 劉曉, 「元代司法審判中種族因素的影響」, 『性別·宗教·種族·階級與中國傳統司法』(柳立言 主編),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2013.
- 7) 黃二寧, 「元代族群關係再思考: 以“族郡內外制”爲中心」, 『中央社會主義學院學報』 2020-1.
- 8) 吳鳳霞, 「元代四等人制產生的原因」, 『廊坊師範學院學報』 2001-3; 龔蔭, 「元朝民族等級政治述略」, 『西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科版)』 24-6, 2003; 蔡鳳林, 「論元朝的“四等人制”: 兼論元朝政治文化的若干特徵」, 『內蒙古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37-3, 2008; 李大龍, 「淺議元朝的“四等人”政策」, 『史學集刊』 2010-2; 胡小鵬, 「元代“色目人”與二等人制」, 『西北師大學報(社會科學版)』 50-6, 2013; 吳志堅, 「元代科學的四等人制和地域差異」, 『元史及民族與邊疆研究集刊』 28, 2014; 楊富有, 「元代的民族等級制實質及其成因分析」, 『銅仁學院學報』 19-7, 2017; 馬聰, 詹政, 「元朝民族分治等級

4등인제에 관한 여러 비판·논쟁 중 가장 많은 논의가 집중되는 지점은 종족 차별성에 관한 문제다. 즉 종래 통설이 몽골 지배층이 4등인제를 통해 의도적이고 철저하게 각 종족을 차별하고 몽골 지상주의를 관철했음을 인정하는 반면, 근래 船田善之를 위시한 일부 연구자들은 그것이 차별이 아니라 각 종족에게 本俗法을 적용하기 위한 구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종족 차별성은 4등인제의 주요한 특징으로 원대 몽골 지배층의 종족 인식, 통치 방식 나아가 漢化 여부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 탐구 대상이다. 이에 본고에서 4등인제의 종족 차별성에 관한 諸說을 상세히 검토하고 관련 문헌 사료를 최대한 수집·분석하여 이에 대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2. 4등인제는 차별 정책인가?

원대 종족의 4등급 구분과 차별대우를 제도적으로 규정한 문헌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몇몇 연구자들이 차별적 신분체도로써 4등인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⁹⁾ 그러나 오늘날 그러한 기록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필요는 없다. 실재했으나 후대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소실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설령 그러한 제도적 규정이 실재하지 않았더라도 원대 신분 정책의 종족 차별성을 부정하는 견해에 동의하기 어렵다. 몽골 지배층이 의도적으로 각 종족을 구분·차별했음을 뒷받침하는 문헌 기록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4등인제의 종족 차별성을 부정하는 대표적 연구자인 船田善之

制度論析」, 『北方論叢』 2019-3.

9) 船田善之, 앞의 논문, 1999, pp. 55~56; 劉曉, 앞의 논문, pp. 200~201.

는 그것이 몽골 정부가 각 종족에게 제도를 달리 적용하기 위해 문화(本俗)에 따라 속민을 구분한 결과라고 보았다. 그리고 “관직에는 고유한 직무가 있고, 직위에는 고정된 관원이 있는데, 그 장관은 몽골인이 맡고 한인·남인이 다음 자리를 맡는다”라는 기록에서¹⁰⁾ 몽골인을 관청의 장관으로 임명하는 원칙이 존재했으나 색목인을 한인·남인보다 우위에 두는 규정이 없다고 하여 관리 등용에서 색목인의 우월성을 부정했다. 아울러 그 시대 많은 색목인의 고위 관직 등용은 종족과 무관하게 그들이 대부분 몽골에 일찍 귀부하여 제국의 창업·발전에 기여한 根脚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더욱이 “[至元 2년(1265) 2월] 몽골인을 각 路의 다루가치, 한인을 總管, 회회인을 同知로 삼고 이를 영구히 제도로 정했다”라는 기사를 제시하면서¹¹⁾ 몽골 정부가 지방관을 임명할 때 한인을 색목인보다 높게 대우했다고 주장했다.¹²⁾

그러나 그는 3년 후 “[至元 5년(1268) 3월] 諸路의 여진, 거란, 한인으로서 다루가치가 된 자를 파직하고 회회, 위구르, 나이만, 탕구트인은 그대로 두었다”라는 기사와 같이 몽골 정부가 정반대 조치를 취한 기록은 간과한 듯하다.¹³⁾ 이 기사는 그때부터 지방행정 관청의 최고위직인 다루가치에 몽골인과 함께 색목인이 허용되고 한인이 배제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방침은 “[至元] 6년(1269), 각 路의 현임과 投下가 파견한 다루가치에서 여진, 거란, 한인이 많은데, 회회, 위구르, 나이만, 탕구트를 몽골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등용하는 것 외에 그 나머지를 헤아려 혁파하고, 관직

10) 『元史』 卷85 百官1, p. 2120. “官有常職, 位有常員, 其長則蒙古人爲之, 而漢人·南人貳焉.”

11) 『元史』 卷6 世祖3, p. 106. “[至元 2년 2월] 甲子, 以蒙古人充各路達魯花赤, 漢人充總管, 回回人充同知, 永爲定制.”

12) 船田善之, 앞의 논문, 1999, pp. 53~58.

13) 『元史』 卷6 世祖3, p. 118. “[至元 5년 3월] 罷諸路女直·契丹·漢人爲達魯花赤者, 回回·畏兀·乃蠻·唐兀人仍舊.”

경력자는 管民官에서 등용했다”라는 기사와 같이 투하 다루가치를 임명할 때도 되풀이되었다.¹⁴⁾ 이후 몽골 정부가 한인을 색목인의 우위에 두거나 양자를 동일하게 대우하라고 명하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루가치 임명에서 색목인을 한인보다 높이 대우하는 원칙이 존재했다고 추정된다. “延祐 원년(1314), 중서성 신료가 아뢰기를, ‘지난번 漢人參政으로 儒者를 등용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趙世延이 그 적임자입니다’라고 했다. 황제가 말하기를, ‘조세연은 진실로 등용할 만하다. 그러나 雍古(옹구트)氏가 한인이 아니니 그 지위가 마땅히 더 높아야 한다’라고 했다”라는 기록도 14세기 초 중서성 관리의 임명에서 그러한 방침이 견지되었음을 나타낸다.¹⁵⁾ 관리 추천, 음서에 관한 다음 기록에서도 한인에 대한 색목인의 우월성이 확인된다.

[至大 4년(1311)] 겨울 12월, 국자학에서 시험 보고 관리를 천거하는 법을 다시 세웠다. 몽골인에게 6품, 색목인에게 정7품, 한인에게 종7품 관직을 내렸다. 몽골 학생이 시험 보는 법을 마땅히 관대히 하고, 색목인 학생은 마땅히 약간 엄밀하게 하고, 한인 학생은 모든 과목을 치르게 했다.¹⁶⁾

大德 4년(1300) 8월 18일, 중서성이 아뢰어 받든 성지의 요체는 다 음과 같다. “몽골인 근각의 자손이 父兄의 관직을 이어받는 것을 황제가 알고 있다. 그 외 정1품의 자손을 정5품에 임명하고, 종1품의 자손을 종5품에 임명하고, 정2품의 자손을 정6품에 임명하고, 7품까지 이 순서에 따른다. 색목인은 한인보다 1등 더 높게 한다.”¹⁷⁾

14) 『元史』 卷82 選舉2 銓法上, p. 2052. “[至元] 六年, 以隨路見任并各投下創差達魯花赤內, 多女直·契丹·漢人, 除回回·畏吾兒·乃蠻·唐兀同蒙古例許敘用, 其餘擬合革罷, 曾歷仕者, 於管民官內敘用.”

15) 『元史』 卷180 趙世延, p. 4164. “延祐元年, 省臣奏, ‘比奉詔漢人參政用儒者. 趙世延其人也.’ 帝曰, ‘世延誠可用, 然雍古氏非漢人, 其署宜居右.’”

16) 『元史』 卷81 選舉1 學校, p. 2030. “[至大 4년] 冬十二月, 復立國子學試貢法, 蒙古授官六品, 色目正七品, 漢人從七品. 試蒙古生之法宜從寬, 色目生宜稍加密, 漢人生則全科場之制.”

至大 4년(1311) 3월 18일, 받든 조서 안의 한 조항, “모든 관료의 자손이 관직을 이어받을 때 반드시 經·史를 하나씩 시험 보고, 대의에 통달한 자는 임시 복무를 면제하고, 통달하지 못한 자는 돌려보내 공부하게 한다. 몽골·색목인이 시험 보고자 하는 자는 품급을 얻을 때 1 계급을 높인다.”¹⁸⁾

14세기 초 몽골은 科擧를 시행하면서 4종족의 합격자 수를 동등하게 하고 몽골·색목인과 한인·남인의 시험을 분리하여 전자를 쉽게, 후자를 어렵게 출제하고, 전자가 후자의 시험을 치러 합격하면 1품을 높이도록 규정했다. 이는 통상 4등인제의 차별적 성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는 몽골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인·남인을 차별하기 위해 그 방식을 채택한 것이 아니라 당시 과거 시행을 주청한 한인 관료가 몽골·색목인에게 유학을 배우게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보았다.¹⁹⁾ 그러나 그들도 인정했듯이 그 방식이 결과적으로 한인·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으므로 몽골 정부가 애당초 몽골·색목인을 특별하게 우대하려 의도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船田善之는 몽골 정부가 동일한 죄목에 대해 종족에 따라 다르게 처벌한 점도 차별이 아니라 각자의 본속법을 적용한 결과라고 보았다.²⁰⁾ 종족에 의한 형벌의 차이를 나타내는 문헌 기록은 많지 않다. 통상 한인·남인 절도범에게 刺字를 가하고 몽골·색목인에게

17) 『通制條格』 卷6 選舉 殿最. “大德四年八月十八日, 中書省奏, 奉聖旨節該, ‘上位知識有根脚的蒙古人每子孫, 承廕父職·兄職呵, 皇帝識也者. 除那的已外, 壹品子廕正伍品, 從壹品子廕從伍品, 正貳品子廕正陸品, 挨次至柒品. 色目比漢兒人高壹等定奪.’ 欽此.”

18) 『元典章』 卷8 吏部 卷2 官制2 僦使 能通經史免僦使. “至大四年三月十八日, 欽奉詔書內一款, ‘諸職官子孫承廕, 須試一經一史, 能通大義者, 免當僦使, 不通者發還習學, 蒙古色目之人願試者聽, 仍於應得品級量進一階.’”

19) 船田善之, 앞의 논문, 1999, p. 58; 黃二寧, 앞의 논문, p. 144.

20) 船田善之, 위의 논문, p. 58.

이를 면제하는 규정이 형벌적 차별의 사례로 거론되지만,²¹⁾ 이는 본속법에 따른 형벌의 차이로 간주해도 무방하다.²²⁾ 그러나 『元史』 「刑法志」에 수록된 다음 조항을 보면 형벌 측면에서 적어도 몽골인의 우월성이 인정된 듯하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으로부터 소매은 50냥을 징수하여 피해자 가족에게 주고, 은이 없는 자에게는 中統鈔 11錠을 징수하며, 사면된 자에게는 두 배로 배상하게 한다.²³⁾

몽골인이 싸우거나 취해서 한인을 구타하여 죽이면 전쟁에 출정시키고 소매은을 징수하는 벌을 내린다.²⁴⁾

첫 번째 인용문과 같이 그 시기 살인을 저지른 죄인은 기본적으로 사형에 처하는 원칙이 존재했다. 그러나 몽골인이 한인을 살해한 경우 처형하지 않고 出征과 徵銀으로 죄값을 치르게 했다. 보편적·역사적 상식에 비춰볼 때 사형 여부는 본속법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는 몽골 정부가 처형되어야 마땅한 살인범을 의도적으로 가볍게 처벌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元史』 「董文忠傳」에 어떤 이가 한인이 몽골인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을 보고하자 쿠빌라이가 진노하여 범인을 처형하라고 명한 일화가 기재되어 있다. 董文忠이 이를 조사하여 무고임을 밝혀내자 쿠빌

21) 箭內互, 앞의 논문: 『蒙古史研究』, 刀江書院, 1930, p. 338; 蒙思明, 앞의 책: 『元代社會階級制度』, 中華書局, 1980, p. 56.

22) 『元史』 卷104 刑法3, 盜賊, p. 2656. “諸竊盜初犯, 刺左臂, 謂已得財者, 再犯刺右臂, 三犯刺項, 強盜初犯刺項, 並充警跡人, 官司以法拘檢關防之, 其蒙古人有犯, 及婦人犯者, 不在刺字之例”; p. 2665. “諸色目人犯盜, 免刺科斷, 發本管官司設法拘檢, 限內改過者, 除其籍.”

23) 『元史』 卷105 刑法4 殺傷, p. 2675. “諸殺人者死, 仍於家屬徵燒埋銀五十兩給苦主, 無銀者徵中統鈔一十錠, 會赦免罪者倍之.”

24) 『元史』 卷105 刑法4 殺傷, p. 2675. “諸蒙古人因爭及乘醉毆死漢人者, 斷罰出征, 並全徵燒埋銀.”

라이가 명을 거두어 사건이 일단락되었으나,²⁵⁾ 만약 보고 내용이 사실이거나 무고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 한인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²⁶⁾ 한인이 몽골인을 구타하면 사형에 처하는 이 사례를 몽골이 한인을 살해해도 처형되지 않는 위 기록과 비교한다면 형벌 측면에서 몽골인을 한인보다 우대하는 종족 차별이 존재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몽골인은 살인범을 제외하고 법에 따라 구속하되, 담당 관청은 고문하지 않고 매일 음식을 제공한다. 절도범은 포승줄을 풀고 단독으로 구금한다. 여타 크고 작은 범죄자는 이치에 맞게 조사하되, 담당 관청은 체포하지 않고 달아난 자만 수감한다”라는 기록처럼 범인을 체포·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몽골인에게 특혜가 허용되었다.²⁷⁾

蔡鳳林은 “天道에 밝고, 地理를 살피고, 人事를 다하는” 능력을 갖춰야 재상이 될 수 있다는 쿠빌라이의 발언과²⁸⁾ 원대 福德才量이 있어야 재상이 되었다는 明朝人の 평가를 들어²⁹⁾ 몽골 정부가 과도하게 몽골 지상주의를 추구하지 않고 능력 위주로 관리를 선발했다고 주장했다.³⁰⁾ 그러나 “세조께서 정하기를, 한인은 재상이 될 수

25) 『元史』卷148 董文忠, p. 3503. “或告漢人毆傷國人, 及太府監屬盧甲盜剪官布, 帝怒, 命殺以懲眾. 文忠言, ‘今刑曹於囚罪當死者, 已有服辭, 猶必詳讞, 是豈可因人一言, 遽加之重典! 宜付有司闕實, 以俟後命.’ 乃遣文忠及近臣突滿分覈之, 皆得其誣狀, 遂詔原之.”

26) 劉曉, 앞의 논문, pp. 211~212.

27) 『元史』卷103 刑法2 職制下, p. 2632. “諸正蒙古人, 除犯死罪, 監禁依常法, 有司毋得拷掠, 仍日給飲食. 犯真姦盜者, 解束帶佩囊, 散收. 餘犯輕重者, 以理對證, 有司勿執拘之, 逃逸者監收.”

28) 『元史』卷10 世祖7, pp. 201~202. “[至元 15년 6월] 帝諭昂吉兒曰, ‘宰相明天道·察地理·盡人事, 能兼此三者, 乃為稱職. 爾縱有功, 宰相非可覲者. 回回人中阿合馬才任宰相, 阿里年少亦精敏, 南人如呂文煥·范文虎率眾來歸, 或可以相位處之.’”

29) 『水東日記』卷8 宰相須福德才量. “元人為宰相須福德才量四者兼備之說, 誠亦前人所未道也.”

30) 蔡鳳林, 앞의 논문, p. 15. 黃二寧도 南方 士人の 文化·학문 수준이 높았

없고 재상이 되는 자는 모두 國族이다.”³¹⁾ “천하가 태평할 때 臺省의 중요 관직은 北인이 차지하고 한인·남인은 만 명에 한둘도 없었다. 그것을 얻은 자는 州·縣의 낮은 관직에 불과하고 그 역시 거의 없다”라는 상반된 기록도 존재한다.³²⁾ 다음 기록도 그 시대 재상급 고위 관직에 오직 몽골인을 등용하는 원칙이 존재했음을 나타낸다.

[延祐 4년(1317)] 9월 丙寅, 카산이 말하기를, “예부터 승상은 반드시 몽골 혼신을 등용하는데 카산은 회회인으로서 인망이 부족합니다”라고 하며 간절히 사양했다. 황제가 宣徽使 伯答沙를 중서우승상, 카산을 좌승상으로 삼았다.³³⁾

[至正] 6년(1346), 어사대부를 제수받았다. 예부터 臺端(어사대부)은 國姓이 아니면 받을 수 없으므로 太平이 사양하니 [황제가] 특별히 姓을 내리고 그 이름을 고치라고 명했다.³⁴⁾

至元 23년(1286) 남인 程鉅夫가 조정에 올린 글 중 “신이 생각건대, 국가가 江南을 평정한 후 省, 部, 樞密院 등 중앙 관청부터 行省, 行院, 宣慰使, 總管府, 州, 縣 등 지방 관청까지 모두 南人을 함께 등용하고 오직 御史臺, 行臺, 按察司에서 유독 남인을 등용하지 않는데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라는 내용은 몽골이 남송 병합

으므로 몽골 정부가 翰林院, 國史院 등 유관 부서에 그들을 중용했다고 주장했다(黃二寧, 앞의 논문, pp. 147~148).

- 31) 『椒邱文集』 卷8 昭文館大學士平章軍國事博果密卒. “世祖之約, 不以漢人為相, 而所相者皆國族.”
- 32) 『草木子』 卷3 克謹篇. “天下治平之時, 臺省要官皆北人為之, 漢人南人萬中無一二, 其得為者不過州縣卑秩, 蓋亦僅有而絕無者也.”
- 33) 『元史』 卷26 仁宗3, p. 580. “[延祐 4년] 九月丙寅, 合散言, ‘故事, 丞相必用蒙古勳臣. 合散回回人, 不厭人望.’ 遂懇辭. 制以宣徽使伯答沙為中書右丞相, 合散為左丞相.”
- 34) 『元史』 卷140 太平, p. 3368, “[至正] 六年, 拜御史大夫. 故事, 臺端非國姓不以授, 太平因辭, 詔特賜姓而改其名.”

후 일부 관청에서 남인을 등용했음을 알려준다.³⁵⁾ 그러나 반대로 다음 기사는 쿠빌라이 시기 중앙·지방의 여러 관직에서 남인이 배제되었음을 나타낸다.

新附에 이름을 올린 남방의 현자가 직무·예절을 알지 못한다고 트집 잡아 북방의 주·현이 모두 남방의 선비를 쓰지 않았다.³⁶⁾

[至元 23년(1286)] 어떤 이가 趙孟頫는 어리고 남방 출신이라서 국법을 어지럽히니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책망했다. [……] 황제가 처음에 조맹부를 중용하려 했으나 신료들이 반대했다.³⁷⁾

世祖 이후 省·臺의 관직에 남인을 배척하고 쓰지 않았는데, 이때(1352) 이르러 비로소 舊制가 회복되어 南士가 다시 省·臺에 등용되었다. 그것이 貢師泰부터 시작되었으니 사람들이 인재를 얻었다고 했다.³⁸⁾

至元 24년(1287) 쿠빌라이는 정거부의 御史中丞 임명을 놓고 신료들과 논쟁한 끝에 “이제부터 省·部·臺·院에 반드시 남인을 기용하라”라는 명을 내렸다.³⁹⁾ 그리고 程鉅夫, 葉李 등 남인을 御史臺, 尙書省의 요직에 임명했다.⁴⁰⁾ 그러나 이는 매우 특별한 경우로서 대다수

35) 『雪樓集』 卷10 吏治五事 公選. “臣竊惟國家自平江南以來, 內而省·部·樞密院等衙門, 外而行省·行院·宣慰司·總管府·州·縣官, 並皆參用南人, 惟御史臺·行臺·按察司獨不用南人, 臣不知其說也.”

36) 『雪樓集』 卷10 吏治五事 通南北之選. “南方之賢者列姓名於新附, 而冒不識體例之譏, 故北方州縣並無南方人士.”

37) 『元史』 卷173 趙孟頫, p. 4019. “[至元 23년] 或以孟頫年少, 初自南方來, 譏國法不便, 意頗不平 [……] 帝初欲大用孟頫, 議者難之.”

38) 『元史』 卷187 貢師泰, p. 4295. “自世祖以後, 省臺之職, 南人斥不用, 及是, 始復舊制, 於是南士復得居省臺, 自師泰始, 時論以為得人.”

39) 『元史』 卷172 程鉅夫, p. 4016. “[至元] 二十四年, 立尙書省, 詔以為參知政事, 鉅夫固辭. 又命為御史中丞, 臺臣言, ‘鉅夫南人, 且年少.’ 帝大怒曰, ‘汝未用南人, 何以知南人不可用! 自今省部臺院, 必參用南人.’ 遂以鉅夫仍為集賢直學士, 拜侍御史, 行御史臺事, 奉詔求賢於江南.”

남방 士인에게 그러한 관운이 허락되지 않았다. “[至元 30년(1293)] 황제가 마침 그를 요직에 두려 했는데, 조정 신료들이 陳孚가 남인 이므로 성을 내며 자못 그를 시기하니, 마침내 [그가] 建德路總管府治中에 임명되고 다시 衢州의 治中으로 옮겼는데 가는 곳마다 많은 선정을 베풀었다”라는 기사와 같이 남인을 기용하라는 쿠빌라이의 명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⁴¹⁾ 따라서 그 시기 비록 명목상 남인에게 관직 진출의 길이 열려 있었으나 여러 신료들의 반대로 인해 실제 등용되는 경우가 드물고 그 지위·권한도 미약했다. 쿠빌라이 사후에도 다음과 같이 거듭 남인을 파직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大德 丁未(1307), 杭城에 기근이 들었는데, 公(王文彪)이 진휼 사무를 잘 처리하여 수만 명을 살렸다. 이로써 浙西憲府의 서리로 승진했는데 남인을 憲府의 서리로 쓰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와 紹興의 서리가 되었다.⁴²⁾

[王良이] 淮東廉訪司에서 서리로 등용되고 淮西廉訪司로 자리를 옮겼다. 남방 선비를 혁파하라는 명이 내려져 兩淮都轉運鹽使司의 서리가 되고 임기가 끝나 廬州錄事判官에 임명되었다.⁴³⁾

그리고 이 같은 방침은 “당시(특테무르 시기) 남인은 정치로써 천하에 이름을 떨쳤는데, 그 지위가 省·憲에 오른 자는 오직 王都

40) 『元史』 卷14 世祖11, p. 296. “[至元 24년 윤2월] 其尚書, 以桑哥·鐵木兒平章政事, 阿魯渾撒里右丞, 葉李左丞, 馬紹參知政事, 餘一員議選回回人充”

41) 『元史』 卷190 陳孚 p. 4339. “[至元 30년] 帝方欲置之要地, 而廷臣以孚南人, 且尚氣, 頗嫉忌之, 遂除建德路總管府治中, 再遷治中衢州, 所至多著善政.”

42) 『王忠文集』 卷22 行狀 元中憲大夫僉庸田司事致仕王公行狀. “大德丁未, 杭城飢, 公理賑事所活數萬人, 用薦者陞浙西憲府掾, 會有例憲掾南人不得用, 復吏紹興.”

43) 『元史』 卷192 王良, p. 4370. “淮東廉訪司辟為書吏, 遷淮西. 會例革南土, 就為吏於兩淮都轉運鹽使司, 以歲月及格, 授廬州錄事判官.”

中 뿐이다”라는 기사와 같이 14세기 전반기에 걸쳐 대체로 일관되게 유지되었다.⁴⁴⁾ 至正 12년(1352) 3월 비로소 “省·院·臺에서 남인을 쓰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天下 四海 안에서 나의 백성이 아닌 자가 없으니 마땅히 世祖 시기 인재 등용 방식에 따라 남인 중 재주와 학식 있는 자를 모두 등용하라”라는 토근테무르의 조치가 반포되었고,⁴⁵⁾ 16년(1356) 2월에도 “六部, 大司農司, 集賢院, 翰林國史院, 太常禮儀院, 祕書監, 崇文監, 國子監, 都水監, 侍儀司 등의 正官에게 각각 재능이 뛰어난 관리 1명씩 추천하되 몽골, 색목, 한인, 남인을 가리지 말라”라는 동일 취지의 명이 내려졌다.⁴⁶⁾ 그러나 이후 그 명령이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12년 후 몽골은 明의 공격을 받아 중원을 상실하고 북방으로 후퇴했다. 그러므로 몽골이 남인을 관직에서 배제하는 정책은 강남을 지배한 대부분 기간에서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몽골 정부가 한인·남인의 무기 소지를 금지한 정책은 4등인제의 종족 차별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근거로 거론된다. 그러나 蔡鳳林은 그것이 백성들의 반항을 방지하기 위해 전통 중국왕조가 시행한 법제와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몽골 정부가 오직 한인·남인에게만 그 정책을 시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 명령이 대체로 쿠빌라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그때 몽골의 정복·지배에 대한 남인의 반감과 한인·남인에 대한 쿠빌라이의 경계심이

44) 『元史』 卷184 王都中, p. 4232. “當世南人以政事之名聞天下, 而位登省憲者, 惟都中而已.”

45) 『元史』 卷92 百官8 選舉附錄 科目, p. 2345. “[至正] 十二年三月, 有旨, ‘省院臺不用南人, 似有偏負. 天下四海之內, 莫非吾民, 宜依世祖時用人之法, 南人有才學者, 皆令用之.’ 自是累科南方之進士, 始有為御史, 為憲司官, 為尚書者矣.”

46) 『元史』 卷44 順帝7, p. 930. “[至正 16년 2월 甲戌] 命六部·大司農司·集賢翰林國史兩院·太常禮儀院·祕書·崇文·國子·都水監·侍儀司等正官, 各舉才堪守令者一人, 不拘蒙古·色目·漢·南人.”

유난히 컸기 때문이며, 쿠빌라이 사후 그러한 명령이 거의 반포되지 않았다고 했다.⁴⁷⁾

하지만 쿠빌라이 사후 한인·남인에 대한 무기 소지 금지령이 반포되지 않은 것은 그때 이미 그 목적이 달성되어 더이상 명을 내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元史』 『刑法志』에 한인의 병장기 소지 금지가 몽골 정부의 보편 정책으로 명시되어 있다.⁴⁸⁾ 또한 그가 제시한 쿠빌라이가 몽골인, 여진·수달달인, 티벳인의 무기 소지를 금지한 기록도 매우 특별한 사례로서 4등인제의 차별적 성격을 부정할 만한 근거로 충분치 않다.⁴⁹⁾ 원 일대에 걸쳐 몽골 정부가 몽골·색목인에게 그러한 명을 내린 사례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다음 기록은 그들에게 무기 소지를 허용했음을 시사한다.

[至元 22년(1285) 5월] 漢地와 江南에서 거두어들이는 활·화살을 3등급으로 나누어 下等은 폐기하고, 中等은 근처 몽골인에게 하사하고, 上等은 창고에 저장하게 했다. 行省, 行院, 行臺가 그 직무를 담당하고 省, 院, 臺가 없으면 다루가치, 위구르, 회회인 담당관이 담당하고, 漢人, 新附人은 비록 담당관이라도 그 직무를 맡지 못하게 했다.⁵⁰⁾

47) 蔡鳳林, 앞의 논문, pp. 15~16.

48) 『元史』 卷105 刑法4, 禁令, p. 2681. “諸漢人持兵器者, 禁之.”

49) 그는 쿠빌라이가 至元 13년(1276) 윤3월 티벳 승려의 무기 소지를 금지하고(『元史』 卷9 世祖6, p. 181. “甲子, 禁西番僧持軍器”), 至元 24년(1287) 정월 女直·水達達 지역의 弓矢 소지 금지를 해제하고(『元史』 卷14 世祖11, p. 295. “弛女直·水達達地弓矢之禁”), 동년 5월 나얀의 부족민에게 乘馬와 弓矢 소지를 금지한 3가지 사례를 들었다(『元史』 卷14 世祖11, p. 298. “五月己亥, 遣也先傳旨諭北京等處宣慰司, 凡隸乃顏所部者禁其往來, 毋令乘馬持弓矢”). 첫 번째의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두세 번째는 나얀의 반란이라는 특수한 위기 상황과 관련 있으므로 평시에 한인·남인의 무기 소지를 금지한 조치와 다르다.

50) 『元史』 卷13 世祖10, p. 276. “[至元 22년 5월] 分漢地及江南所拘弓箭兵器為三等, 下等毀之, 中等賜近居蒙古人, 上等貯於庫. 有行省·行院·行臺者掌之, 無省·院·臺者達魯花赤·畏兀·回回居職者掌之, 漢人·新附人雖居職無有所預.”

[至元 26년(1289) 6월] 己酉, 鞏昌의 汪惟和가 말하기를, “근래 한인의 병장기를 거두는데 臣의 관내에서는 이미 금지했으니 이제부터 신이 병장기를 쓸 때 安西 관청의 창고에서 취하겠습니다”라고 했다. 황제가 말하기를, “너의 집안은 여타 한인과 달라서 활·화살 소지가 금지되지 않았으니 얼마든지 소지해도 좋다”라고 했다.⁵¹⁾

첫 번째 한인·남인에게 거두어들이는 활·화살을 몽골인에게 하사했다는 기록은 몽골인이 무기 소지 제한에 구애받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한인 汪惟和가 여타 한인과 다른 집안 출신이므로 활·화살 소지가 금지되지 않았다는 기록도 그의 가문이 무기 소지가 허용된 몽골·색목인으로 대우받았음을 보여준다. 위 기록은 모두 쿠빌라이 정부가 한인·남인에게 무기 소지를 금지한 초창기에 해당하지만 이후 이를 해제하거나 몽골·색목인에게 유사한 명령을 반포했다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장기간 유지되었으리라 추측된다. 따라서 그 정책에도 4등인제의 종족 차별 성격이 다분히 반영되어 있다.

3. 4등급인가? 3등급인가? 2등급인가?

통상 몽골 정부가 광대한 통치 영역 안에 거주한 諸종족을 몽골인, 색목인, 한인, 남인 4종으로 구분하고 모든 방면에서 그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고 인식된다. 그러나 4등인제의 신분 등급 구분 방식과 다른 의견도 존재한다. 일찍이 箭內亘은 남인을 한인 범주에 포함시켜 이를 ‘3계급’으로 보았고,⁵²⁾ 愛宕松男은 몽골인-색목인, 한인-남

51) 『元史』 卷15 世祖12, p. 323. “[至元 26년 6월] 己酉, 鞏昌汪惟和言, ‘近括漢人兵器, 臣管內已禁絕, 自今臣凡用兵器, 乞取之安西官庫.’ 帝曰, ‘汝家不與它漢人比, 弓矢不汝禁也, 任汝執之.’”

52) 箭內亘, 앞의 논문.

인을 각각 동일 범주로 묶어 2계급으로 간주했으며,⁵³⁾ 胡小鵬도 같은 의미에서 ‘2등인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⁵⁴⁾ 이처럼 의견이 분분한 것은 각 종족 등급 간 차별의 유무와 정도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그 문제를 상세히 검토해보려 한다.

우선 몽골-색목인 간 차별 문제를 살펴보겠다. 『經世大典』에 “國家는 國人을 色目과 다르게 대우하고, 世族을 庶人과 다르게 대우한다”라는 규정이 있다.⁵⁵⁾ 이는 몽골 정부가 몽골인과 색목인을 차별적으로 대우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실제로 양자 간 등급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문헌 기록은 거의 없다. 오히려 여러 기록에서 원대 최상위 계층으로서 양자가 함께 명기되어 있다. 또한 몽골인 범주에 색목인이 포함되었음을 암시하는 기록도 여럿 발견된다. 앞장 서두에 제시한 “관직에는 고유한 직무가 있고, 직위에는 고정된 관원이 있는데, 그 장관은 몽골인이 맡고 한인, 남인이 다음 자리를 맡는다”라는 기사에서 4종족 중 색목인만 언급되지 않았다.⁵⁶⁾ 船田善之는 이를 그 시기 색목인을 한인·남인보다 우위에 두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근거로 제시했다.⁵⁷⁾ 그러나 그 몽골인의 범주에 색목인이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53) 愛宕松男, 앞의 논문, 1937: 『愛宕松男 東洋史學論集 第五卷 東西交渉史』, 三一書房, 1989, pp. 225~226.

54) 胡小鵬, 앞의 논문.

55) 『經世大典』 第9 憲典 名例篇 八議. “國家待國人異色目, 待世族異庶人.” 胡小鵬은 여기에서 色目이 서역인뿐 아니라 한인, 남인을 포함한 非몽골인 전체를 가리키고, 이를 의미하는 몽골어 카리 이르겐(qari-irgen)과 상통한다고 보았다. 이에 色目人 용어가 오직 漢人の 인식과 漢語에서 출현했으므로 몽골어, 페르시아어에 그 對譯語가 없다는 船田善之의 견해를(船田善之, 앞의 논문, 1999, pp. 44~49) 비판하고 그것이 몽골인의 인식·언어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했다(胡小鵬, 「元代族群認知的演變: 以“色目人”爲中心」, 『西北師大學報(社會科學版)』 59-6, 2022, pp. 111~113).

56) 『元史』 卷85 百官1, p. 2120. “官有常職, 位有常員, 其長則蒙古人爲之, 而漢人·南人貳焉.”

57) 船田善之, 앞의 논문, 1999, p. 56.

여지도 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이 몽골 정부가 양자를 동일하게 간주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至元 21년(1284) 8월] 軍官의 格例를 정하는데 河西, 回回, 위구르 등이 각 관품에 따라 萬戶府 다루가치가 되는 경우 몽골인과 같게 하고, 여진·거란은 한인과 같게 한다. 만약 여진·거란 중 西北에서 태어나 漢語를 모르는 자는 몽골인과 같게 하고, 漢地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진은 한인과 같게 했다.⁵⁸⁾

같은 맥락에서 4종족 중 색목인이 언급되지 않은 다음 기록에서도 몽골인(北人)의 범주에 색목인이 포함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成宗 大德 2년(1298) 12월, 각 행정에서 軍馬를 지휘하는 관원을 정했다. 무릇 수종하는 군사에 몽골인 장관 30명, 차관 20명, 한인 10명을 두었다.⁵⁹⁾

[大德 8년(1304) 3월] 황제가 명하기를, “諸王·駙馬의 영지에서 다루가치는 오직 몽골인을 등용하고, 3년이 지나면 규정에 따라 교대하고, 몽골 이름을 쓰는 한인, 여진, 거란인은 모두 파직하라”라고 했다.⁶⁰⁾

천하가 태평할 때 臺·省의 중요 관직은 北人이 차지하고 남인·한인은 만 명에 한둘도 없었다. 그것을 얻은 자는 州·縣의 낮은 관직에 불과하고 그 역시 거의 없다.⁶¹⁾

58) 『元史』 卷13 世祖10, p. 268. “[至元 21년 8월] 定擬軍官格例, 以河西·回回·畏吾兒等依各官品充萬戶府達魯花赤, 同蒙古人. 女直·契丹, 同漢人. 若女直·契丹生西北不通漢語者, 同蒙古人. 女直生長漢地, 同漢人.”

59) 『元史』 卷98 兵1 兵制, p. 2520. “成宗大德二年十二月, 定各省提調軍馬官員. 凡用隨從軍士, 蒙古長官三十名, 次官二十名, 漢人一十名.”

60) 『元史』 卷21 成宗4, p. 458. “[大德 8년 3월] 詔, ‘諸王·駙馬所分郡邑, 達魯花赤惟用蒙古人, 三年依例遷代, 其漢人·女直·契丹名為蒙古者皆罷之.’”

61) 『草木子』 卷3 克謹篇. “天下治平之時, 臺省要官皆北人為之, 漢人南人萬中無一二, 其得為者不過州縣卑秩, 蓋亦僅有而絕無者也.”

이처럼 몽골인과 색목인을 동일시하는 기록이 있으므로 양자를 동등한 신분 계급으로 보는 견해도 납득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비록 희소하지만 다음과 같이 양자 간 신분 격차를 보여주는 기록도 전해진다.

[至元 26년(1289)] 황제가 킵착 군사들을 가장 먼저 포상하려 했다. 투투카가 말하기를, “법도에 따라 마땅히 몽골의 장수들에게 먼저 포상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황제가 말하기를, “너는 사양하지 말라. 몽골인이 진실로 너의 오른쪽에 있으나 전투에서 어찌 너의 오른쪽에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여러 장수들에게 차등 있게 포상하라고 명했다.⁶²⁾

[延祐 4년(1317)] 9월 丙寅, 카산이 말하기를, “예로부터 승상은 반드시 몽골 훈신을 등용하는데 카산은 회회인으로서 인망이 부족합니다”라고 하며 간절히 사양했다. 황제가 宣徽使 伯答沙를 중서우승상, 카산을 좌승상으로 삼았다.⁶³⁾

첫 번째는 킵착인 투투카가 북변에서 카이두를 격파한 후 쿠빌라이로부터 포상받는 장면을 묘사한 기록이다. 여기에서 그의 발언은 당시 색목인보다 몽골인을 먼저 포상하는 관례가 존재했음을 나타낸다. 또한 몽골인이 그의 오른쪽에 있다는 쿠빌라이의 발언은 좌측보다 우측을 상위에 두는 몽골의 전통을 언급한 것으로 몽골인이 색목인보다 우월하게 대우받았음을 알려준다. 두 번째 기사도 아유르바르와다가 자신이 총애하는 회회인 카산을 승상에 등용하려 했을 때 카산이 그 자리에 반드시 몽골인을 등용하는 전통

62) 『元史』 卷128 土土哈, p. 3134. “[至元 26年] 論功行賞, 帝欲先欽察之土土哈言, ‘慶賞之典, 蒙古將吏宜先之.’ 帝曰, ‘爾毋飾讓, 蒙古人誠居汝右, 力戰豈在汝右耶?’ 召諸將頒賞有差.”

63) 『元史』 卷26 仁宗3, p. 580. “[延祐 4年] 九月丙寅, 合散言, ‘故事, 丞相必用蒙古勳臣, 合散回回人, 不厭人望.’ 遂懇辭. 制以宣徽使伯答沙為中書右丞相, 合散為左丞相.”

을 언급하면서 사양했음을 전한다. 다음 기록도 몽골 정부가 관리를 등용할 때 몽골인을 색목인보다 높게 대우했음을 보여준다.

[大德 원년(1297) 4월] 丙申, 중서성, 어사대 신료가 말하기를, “[……] 각 道 廉訪司는 반드시 몽골인을 廉訪使로 임명하고 혹 없으면 색목 고위가문 자손을 임명하고 그다음 자리에 색목, 한인을 임명해주시시오. [……]”라고 하니, 황제가 말하길, “그렇게 하라”라고 했다.⁶⁴⁾

[至大 4년(1311)] 겨울 12월, 국자학에서 시험 보고 관리를 천거하는 법을 다시 세웠다. 몽골인에게 6품, 색목인에게 정7품, 한인에게 종7품 관직을 내렸다. 몽골 학생이 시험 보는 법은 마땅히 관대히 하고, 색목인 학생은 마땅히 약간 엄밀하게 하고, 한인 학생은 모든 과목을 치르게 했다.⁶⁵⁾

이 같은 양자 간 신분 격차를 인정한다면 아우르바르와다 시기 시행된 과거의 廷試에서 國人(몽골인)이 壯元, 옹구트부 출신 馬祖常이 우수한 성적에도 그 아래 위치했다는 아래 기록도 몽골 정부의 의도적인 차별의 결과라고 짐작해볼 만하다.

[延祐 원년(1314)], [황제가] 貢擧를 시행하여 현명한 인재를 구하라고 명했다. 공은 그 동생 祖孝와 함께 향리에서 천거되었는데 1등이었다. 다음 해(1215) 예부에서 會試를 치르고 함께 선발되었는데 공이 또 1등이었다. 廷試에서 國人이 1등이 되고 공은 2甲에서 1등이었는데 은연히 그 명성을 京師에 떨쳤다.⁶⁶⁾

64) 『元史』 卷19 成宗2, pp. 410~411. “[大德 원년 4월] 丙申, 中書省·御史臺 臣言, ‘[……] 各道廉訪司必擇蒙古人爲使, 或闕, 則以色目世臣子孫爲之, 其次參以色目·漢人. [……].’ 制曰, ‘可.’”

65) 『元史』 卷81 選舉1 學校, p. 2030. “[至大 4년] 冬十二月, 復立國子學試貢法, 蒙古授官六品, 色目正七品, 漢人從七品. 試蒙古生之法宜從寬, 色目生宜稍加密, 漢人生則全科場之制.”

66) 『滋溪文稿』 卷9 魏郡馬文貞公墓誌銘. “延祐元年, 詔開貢擧, 網羅賢才. 公

다음 색목인-한인 간 차별 문제를 살펴보자. 앞장에서 논의했듯이 관리 등용, 무기 소지, 과거, 형벌, 학교 등 여러 분야에서 양자 간 신분 격차가 확인된다. 따라서 대다수 연구자들이 양자 간 현격한 신분 차별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 문제를 새삼 논의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원대 한인이 몽골·색목인과 달리 중요한 문·무 관직에서 배제되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을 제시하는 것으로 논의를 대신하고자 한다.

[至元] 15년(1278), 宋 張世傑이 해상에서 廣王 昺을 즉위시키자 閩·廣에서 호응하니 [황제가] 張弘範으로 하여금 가서 평정하게 하고 蒙古漢軍都元帥에 임명했다. [장홍범이] 출정을 고하여 말하기를, “한인으로서 몽골군을 통솔한 자가 없으나, 몽골군이 臣을 믿으니 원수에 임명해 주십시오”라고 했다.⁶⁷⁾

[至元] 22년(1285), [趙玉國이] 이전 관직에서 자리를 옮겨 徽州를 다스렸는데 한인이 그 관직에 임명되는 것은 이전에 허용되지 않았다.⁶⁸⁾

다음 해(1288), 황제의 수레가 上都에 행차했다. 옛 제도에 樞府(추밀원)의 관리가 호종하고 매년 한 관원을 남겨 추밀원 사무를 맡게 했는데 한인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때 鄭制宜에게 그 일을 맡겼다. 정제의가 겸손하게 사양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그대를 어찌 한인과 비교하겠는가!”라고 하면서 마침내 그를 남게 했다.⁶⁹⁾

偕其弟祖孝俱薦於鄉，公擢第一。明年會試禮部，又俱中選，公仍第一，廷試則以國人居其首，公居第二甲第一人，隱然名動京師。”

- 67) 『元史』 卷156 張弘範, p. 3682. “[至元] 十五年，宋張世傑立廣王昺于海上，閩·廣響應，俾弘範往平之，授蒙古漢軍都元帥。陛辭奏曰，‘漢人無統蒙古軍者，乞以蒙古信臣為首帥。’”
- 68) 『槩菴集』 卷6 少中大夫嘉定路總管趙公神道碑銘. “[至元] 二十二年，以故官移監徽州，漢人居是官，故事所不許.”
- 69) 『元史』 卷154 鄭鼎, p. 3637. “明年，車駕幸上都。舊制，樞府官從行，歲留一員司本院事，漢人不得與。至是，以屬制宜。制宜遜辭，帝曰，‘汝豈漢人比

[元統初(1333)] 嶺海의 徭賊이 반란을 일으키자 조정은 행성의 군사를 차출하여 가서 토벌하게 했는데 공교롭게도 군대의 지휘관이 부족했으나 한인이 軍政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다. 王克敬이 항의하여 말하기를, “행성이 그 업무를 맡고 있는데 만일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발생해도 법령에 구속되어 앉아서 보고 있겠습니까!”라고 했다.⁷⁰⁾

[至正 15년(1355)] 일찍이 湖廣의 倪라는 도적이 威順王의 아들을 인질로 삼고 사람을 보내 항복을 청하면서 湖廣行省 平章에 임명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조정 신료의 절반이 이를 허락하자고 했다. 成遵이 말하기를, “평장은 재상 다음의 자리입니다. 태평한 시기에 비록 덕망 있는 한인에게도 주지 않았는데 지금 반역한 역적이 위세를 부리며 요구한다고 하여 그것을 가볍게 준다면 기강이 어찌 되겠습니까!”라고 했다.⁷¹⁾

마지막으로 한인-남인 간 차별 문제를 살펴보겠다. 양자의 지위·권한의 차이를 보여주는 문헌 기록은 찾기 어렵다. 몽골 정부가 관리 등용, 무기 소지, 과거 측면에서 남인을 의도적으로 배척한 기록이 있으나⁷²⁾ 한인과 비교되지 않아 그 지위가 한인보다 낮았는지 알기 어렵다. 오히려 원대 최하위 계층으로서 양자가 함께 명기된 기록이 훨씬 많다. 이에 일부 연구자들이 양자를 동일 계층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비록 크지 않지만 양자 사이에 신분적 차이가 존재한 듯하다. 다음 기록은 14세기 초 관직에서 양자가

耶! 竟留之.”

70) 『元史』 卷184 王克敬, p. 4235. “[元統初] 嶺海徭賊竊發, 朝廷調戍兵之在行省者往討之, 會提調軍馬官缺, 故事, 漢人不得與軍政, 眾莫知所為. 克敬抗言, ‘行省任方面之寄, 假令萬一有重於此者, 亦將拘法坐視邪!’”

71) 『元史』 卷186 成遵, pp. 4281~4282. “[至正 15년] 先是, 湖廣倪賊, 質威順王之子, 而遣人請降, 求為湖廣行省平章, 朝臣欲許者半, 遵曰, ‘平章之職, 亞宰相也. 承平之時, 雖德望漢人, 抑而不與, 今叛逆之賊, 挾勢要求, 輕以與之, 如綱紀何!’”

72) 箭內互, 앞의 논문, pp. 343~344 참조.

차별적으로 대우받았음을 시사한다.

[董士選이] 元明善에게 술을 권하며 말하기를, “士選은 공신의 자손으로 어사대, 증서성을 드나들며 벼슬하면서 국가에 기여하지 못했으나 여러 훌륭한 선비를 얻어 조정에 등용시켰습니다. 復初(元明善)와 伯生(虞集)은 훗날 반드시 모두 빛을 보겠으나 사람들이 이간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복초는 中原人이라 벼슬길이 순탄하겠으나 백생은 南人이라 복초로 인해 좌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와 술을 마셨으니 부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다.⁷³⁾

또한 다음과 같이 14세기 중엽 과거 합격자 선발에서도 양자의 차별적 지위가 확인된다.

至正 8년(1348) 가을, 조정이 천하의 鄉貢之士를 모아 禮部에서 會試를 보게 했다. 시험관이 新安 王伯恂의 답안을 보고 놀라고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 자는 천하의 뛰어난 인재다. 마땅히 1등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그 답안을 좌우에 두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렸다. 얼마 후 동료 시험관이 말하기를, “王君은 南人이니 1등이 아니라 2등이 되어야 하므로 2등에 이름을 올리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했다. 시험관이 말하기를, “우리가 학문 수준의 高下를 평가해야지 어찌 南北을 구분하겠는가? 2등으로 삼을 바에 차라리 합격시키지 않겠다”라고 했다. 며칠간 논쟁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합격자 발표 시기가 임박하자, 主文이 다른 답안을 취하고 만족하여, 왕군은 마침내 낙방했다. 합격자 발표일에 시험관이 스스로 책망하고, 선비들도 서로 탄식하며 말하기를, “왕군의 낙방을 함께 논의하면 어떻겠는가?”라고 했다. 이에 왕군의 사안을 宣文閣에서 검토시키도록 의논했다. 그러나 왕군은 이미 남쪽으로 떠나갔다.⁷⁴⁾

73) 『元史』 卷181 元明善, p. 4173. “乃舉酒屬明善曰, ‘士選以功臣子, 出入臺省, 無補國家, 惟求得佳士數人, 為朝廷用之. 如復初與伯生, 他日必皆光顯, 然恐不免為人構間. 復初中原人也, 仕必當道, 伯生南人, 將為復初摧折. 今為我飲此酒, 慎勿如是.’”

원대 과거는 右榜, 左榜으로 구분되어 몽골·색목인이 우방, 한인·남인이 좌방에서 시험을 치르고, 합격자도 각기 선발되었다.⁷⁵⁾ 따라서 윗글에서 王伯恂이 남인이라는 이유로 1등을 차지하지 못한 것은 좌방의 합격자 선발에서 반드시 한인을 1등으로 삼는 방침이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앞장에서 1276년 몽골이 남송을 병합한 후 중앙·지방의 중요 관직에서 의도적으로 남인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한 경향이 심해지자 1287년 쿠빌라이가 省·部·臺·院에서 반드시 남인을 기용하라고 명했으나 이는 14세기 중엽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1352년 토곤테무르가 고위 관청에서 남인을 등용하라고 명함으로써 그때부터 그들에게 관직 진출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1368년 몽골이 중원을 상실할 때까지 실제로 남인이 활발하게 관직에 등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 설령 남인이 대거 관료로 진출했다더라도 그 기간은 단 16년에 불과하다. 즉 92년에 걸친 몽골의 강남 지배 기간(1276~1368) 대부분에서 남인은 줄곧 중요 관직에서 배제되었다. 반면 비록 그 수가 많지 않지만 중서성의 재상급 고위직에 몇몇 한인이 등용되었다.⁷⁶⁾ 그러므로 적어도 관리 등용 측면에서 한인이 남인보다 우월하게 대우받았다고 볼 수 있다.

74) 『師山遺文』 卷1 送王伯恂序. “至正八年春, 朝廷合天下鄉貢之士會試于禮部. 考官得新安王伯恂之卷, 驚且喜曰, ‘此天下奇才也, 宜置第一.’ 且度其卷左右, 以俟揭曉. 未幾, 同列有謂, ‘王君南人, 不宜居第一, 欲屈置第二, 且虛第二名以待.’ 考者曰, ‘吾儕較藝以文第其高下, 豈分南北耶? 欲屈置第二, 寧棄不取耳.’ 爭論累日, 終無定見, 揭曉期迫, 主文乃取他卷以足之, 王君竟在不取. 揭曉之日, 考官自相訟責, 士子交相愧嘆曰, ‘王君下第, 如公論何?’ 乃議舉王君為宣文閣檢討. 而王君已飄然南矣.”

75) 『元史』 卷81 選舉1, p. 2019. “蒙古·色目人作一榜, 漢人·南人作一榜. 第一名賜進士及第, 從六品, 第二名以下及第二甲, 皆正七品, 第三甲以下, 皆正八品, 兩榜並同”; p. 2025. “中書省以中選舉人分為二榜, 揭于省門之左右.”

76) 『元史』 卷112·113 宰相年表1·2 참조.

4. 종족 차별인가? 계급 차별인가?

4등인제는 통상 종족 차별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冉守祖는 한인 지주가 몽골 지배층과 결탁하여 세력·지위를 보전하고, 여러 한인이 고위 관직에 등용되었으며, 몽골·색목인도 한인과 같은 하층민이 존재했음을 들어 그 본질이 계급 차별이라고 주장했다.⁷⁷⁾ 그의 논고는 출간 시기에 비추어 다분히 계급투쟁 역사관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이지만, 그가 거론한 史實은 오늘날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실제로 몽골은 건국 초부터 제국의 창업·발전에 기여한 공신 가문 즉 根脚 출신 인사를 고위직에 기용했다. 다음 기록들이 그들의 우월한 지위를 증언한다.

元 초기 太師, 太傅, 太保를三公이라 했는데 무칼리 국왕이 처음 태사가 되고 후에 무릇 삼공이 된 자는 모두 나라의 元勳이다. 한인은 오직 劉秉忠이 일찍이 태보가 되었고 그 후에 알려진 바가 드물다.⁷⁸⁾

안타깝게도 元朝의 법에 선비를 취해 등용하는 데 오직 根脚인가를 논했고, 그 외 큰 정치를 도모하여 재상이 되는 자도 모두 근각인이고, 糾彈의 수장도 근각인이고, 여러 관청의 수장이 되는 자도 역시 근각인이다. 그래서 무릇 큰 재능과 도량을 품고 학문이 뛰어난 자는 모두 政事에 참여할 수 없다. 소위 근각인만 오로지 부귀를 누리고, 누린내 나는 모피를 몸에 두르며, 학문을 익히지 않는다.⁷⁹⁾

77) 冉守祖, 앞의 논문, pp. 33~35.

78) 『元史』 卷110 三公表 p. 2769. “元初, 以太師·太傅·太保為三公, 自木華黎國王始為太師, 後凡為三公者, 皆國之元勳, 而漢人則惟劉秉忠嘗為太保, 其後鮮有聞矣.”

79) 『庚申外史』 卷下. “惜乎元朝之法, 取士用人, 惟論根脚, 其餘圖大政為相者, 皆根脚人也. 居糾彈之首者, 又根脚人也. 蒞百司之長者, 亦根脚人也. 而凡負大器·抱大才·蘊道藝者, 俱不得與其政事. 所謂根脚人者, 徒能生長富貴,

벼슬길은 무칼리왕 등 4케식 大根脚 출신이 나뉘어 省·臺에 임명되는 것 외에 그 나머지는 대다수가 서리들이다. 과거를 통해 士人이 선발되는 것은 그 만분의 일에 불과하다.⁸⁰⁾

근각에는 한인이 포함되었고 그들 역시 몽골·색목인 못지않게 후하게 대우받았다. 대표적으로 몽골 초기부터 제국의 확대·발전에 공헌한 董氏 가문을 들 수 있다.

[至元 15년(1278)] 8월 天壽節, 의식이 끝나고 잔치를 베푸는데 황제가 董文炳에게 상석에 앉으라고 하고 종실·대신에게 말하기를, “동문병은 공신이므로 마땅히 여기에 앉아야 한다”라고 하며, 음식이 나와서 황제가 먹을 때마다 동작을 멈추고 [그것을] 동문병에게 내렸다.⁸¹⁾

황제(쿠빌라이)가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그(董士恭)의 선조는 국가에 큰 공을 세운 것이 여타 한인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며 董氏 가문에게 활·화살 소지 금지령을 모두 해제하라고 명했다.⁸²⁾

쿠빌라이가 漢人世侯 史天澤의 손자 史燿를 福建行省 平章政事에 임명할 때 한 신료가 그 자리를 國人(몽골인)으로 충당할 것을 청하자, “太尉(사천택)가 漢인과 동등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후손도 國人이 아니겠는가?”라고 한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⁸³⁾

櫛羶擁毳，素無學問。”

- 80) 『草木子』 卷之四下 雜俎篇. “仕途自木華黎王等四怯薛·大根脚出身，分任省·台外，其餘多是吏員，至於科目取士，是萬分之一耳。”
- 81) 『元史』 卷156 董文炳, p. 3674. “[至元 15년] 八月天壽節，禮成賜宴，帝命坐文炳上坐，諭宗室大臣曰，‘董文炳，功臣也，理當坐是。’每尚食，上食輒輟賜文炳。”
- 82) 『金華黃先生文集』 卷26 資德大夫陝西諸道行御史臺御史中丞董公神道碑. “上顧左右曰，其父祖於國家有大勲勞非他漢人比，即賜以弓矢仍命董氏之族悉弛其禁。”
- 83) 『牧菴集』 卷16 榮祿大夫福建等處行中書省平章政事大司農史公神道碑. “方

한편 몽골·색목인 출신 하층민도 존재했다. 그들은 한인 하층민과 마찬가지로 지배층의 수탈·노역으로 인해 크게 고통받았다. 다음 기록은 그들이 매우 궁핍하여 국내외에 노비로 팔리는 처지에 놓였음을 나타낸다.

[大德 7년(1303), 千奴가] 상소하기를, “山東·河南에 있는 몽골군이 甘肅으로 가서 주둔하려면 만 리를 이동하고 밭집, 말 같은 물자를 모두 스스로 마련해야 하니 이동할 때마다 전답과 심지어 처자식을 파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임무를 마친 자가 돌아오기도 전에 교대하는 자가 출발하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 고통이 날로 심해집니다. 지금 변방이 무사한데 병력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은 진실로 좋은 계획이 아니니 감숙 근방의 병사들에게 [그곳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산동·하남 출신으로 이전에 파견된 자는 관청에서 돈을 내어 그 전답과 처자식을 돌려주어 조금이나마 고통을 줄여주십시오”라고 했다. 황제가 그렇게 하라고 명했다.⁸⁴⁾

[延祐 4년(1317) 7월] 황제가 중서성 신료에게 명하기를, “요즘 건대 몽골의 여러 부족이 고달프고 궁핍하여 종종 자녀를 민가에 노복으로 판다고 한다. 담당 관청에 명하여 그들을 각 부족에 환속시키도록 하라”라고 했다.⁸⁵⁾

至元 28년(1291) 6월 1일, “泉州의 배에서 몽골 남자·부녀들을 데리

議征閩波，大將未得，制授公榮祿大夫·福建等處行中書省平章政事。辭以年少無功，受寵太峻，請回臣所授他人，惟卑官以行。或請以國人首相，帝曰，‘太尉可同漢人耶？其孫非國人何？’

84) 『元史』卷134 和尚, p. 3258. “[大德 7년] 上疏言, ‘蒙古軍在山東·河南者, 往戍甘肅, 跋涉萬里, 裝囊鞍馬之資, 皆其自辦, 每行必鬻田產, 甚則賣妻子. 戍者未歸, 代者當發, 前後相仍, 困苦日甚. 今邊陲無事, 而虛殫兵力, 誠為非計, 請以近甘肅之兵戍之. 而山東·河南前戍者, 官為出錢, 贖其田產妻子, 庶使少有瘳也.’ 詔從之.”

85) 『元史』卷26 仁宗3, p. 580. “[延祐 4년 7월] 帝諭省臣曰, ‘比聞蒙古諸部困乏, 往往鬻子女於民家為婢僕, 其命有司贖之還各部.’”

고 회회(아랍), 忻都(인도)에 가서 매매한다고 한다. 지금 금지하는 문서를 보내 이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행하는 자는 죄를 문도록 하라”라는 성지를 만들었다.⁸⁶⁾

[至元 23년(1286)] 투투카가 킵착인으로서 노비가 된 자를 취해 자신의 군대를 증원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일반 백성을 다수 취했다. 中書僉省 王遇가 그 호적을 조사하여 이를 바로잡았다. 투투카가 마침내 왕우가 불경스런 말을 했다고 아뢰었다. 황제가 노하여 그를 참하려 했는데, 부쿠무가 간하기를, “왕우는 애당초 킵착인 노비를 병사로 삼으라는 명을 받았을 뿐 일반 백성을 그렇게 하라는 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만일 다른 衛도 모두 그렇게 하면 호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왕우를 주살하면 그 후에 사람들이 어찌 폐하를 위해 직분을 다하려 하겠습니까?”라고 했다. 황제가 납득하여 왕우가 죽음을 면했다.⁸⁷⁾

이 같은 한인 출신 고위층과 몽골·색목인 출신 하층민의 존재는 원대 신분질서에서 종족 차별보다 계급 차별 성격이 우선한다는 견해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동일한 근각 출신 고위층이라도 몽골·색목인과 한인 사이에는 분명 종족 차별이 존재했다. 원 일대에 걸쳐 우승상, 좌승상, 평장정사와 같은 중서성 최고위 관원이 대부분 몽골·색목인이고 한인이 거의 없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⁸⁸⁾ 또한 다음 기록은 오직 몽골 대신이 중요한 國事를 보고 받고 결정했음을 알려준다.

86) 『通制條格』 卷27 雜令 蒙古男女過海. “至元二十八年六月初一日, 欽奉聖旨, ‘泉州那裏每海船裏, 蒙古男子婦女人每, 做買賣的往回回田地裏忻都田地裏將去的有, 麼道聽得來. 如今行文書禁約者, 休教將去者, 將去人有罪過者.’ 麼道聖旨了也. 欽此.”

87) 『元史』 卷130 不忽木 p. 3168. “[至元 23년] 吐土哈求欽察之為人奴者增益其軍, 而多取編民. 中書僉省王遇驗其籍改正之. 吐土哈遂奏遇有不臣語. 帝怒欲斬之, 不忽木諫曰, ‘遇始令以欽察之人奴為兵, 未聞以編民也. 萬一他衛皆倣此, 戶口耗矣. 若誅遇, 後人豈肯為陛下盡職乎?’ 帝意解, 遇得不死.”

88) 『元史』 卷112·113 宰相年表1·2 참조.

[至元 24년(1287)] 며칠 후 桑哥가 또 아뢰기를, “中書參政 郭佑를 국문하니, 조세 채납이 많았는데 과분한 자리에서 아무 말 하지 않으면서 질병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臣이 중서성의 일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을 보면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어찌 몽골 大臣에게 알리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그를] 때리고 옥보이니 그제서야 복종했습니다”라고 하니, 세조가 끝까지 그 죄를 물으라고 명했다.⁸⁹⁾

[延祐 원년(1314)] 11월, 太宗正府가 아뢰기를, “역대 조정의 제도에서 중형을 의논할 때 반드시 몽골 大臣이 결정했습니다. 지금 마땅히 태사 우승상이 결정해야 합니다”라고 하니, [황제가] 그렇게 했다.⁹⁰⁾

이처럼 근각 출신 한인은 비록 몽골의 지배층에 포함되어도 國家大事를 결정하고 정치를 주도하는 최고위직에서 배제되었다. 더욱이 남인 출신으로서 근각으로 대우받거나 중앙정부의 최고위직에 오른 인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부 계급 차별적 요소를 부정할 수 없으나 몽골의 신분 정책은 기본적으로 종족 차별적 성격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다.

5. 맺음말

통상 원대 몽골 정부가 모든 주민을 몽골인, 색목인, 한인, 남인으로 구분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4등인제를 시행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그 종족 차별적 성격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4등인제가 계서적 신분질서가 아니라 본속법 적

89) 『元史』 卷205 桑哥, p. 4571. “[至元 24年] 數日, 桑哥又奏, ‘鞫中書參政 郭佑, 多所逋負, 尸位不言, 以疾為託. 臣謂中書之務, 隳惰如此, 汝力不能及, 何不告之蒙古大臣, 故毆辱之, 今已款服.’ 世祖命窮詰之.”

90) 『元史』 卷205 鐵木迭兒, p. 4578. “[延祐 원년] 十一月, 太宗正府奏, ‘累朝舊制, 凡議重刑, 必決於蒙古大臣, 今宜聽於太師右丞相.’ 從之.”

용을 위한 종족 구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관련 문헌 기록을 상세히 검토하면 몽골 정부가 관리 등용, 과거, 형벌, 무기 소지 등 여러 방면에서 의도적으로 몽골·색목인을 우대하고 한인·남인을 차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연구자는 각 종족을 구분하는 경계가 모호하고, 몽골인·색목인, 한인·남인 간 신분 격차가 거의 없다고 하여 그 등급을 3등급이나 2등급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해당 기록을 면밀하게 분석하면 비록 크지 않지만 그들 사이에 엄연히 신분 격차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대 신분 등급은 4등급으로 이해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아울러 한인 출신 고위 관원과 몽골·색목인 출신 하층민의 존재를 근거로 4등인제의 실체가 종족 차별이 아니라 계급 차별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 사례가 희귀하여 4등인제의 종족 차별 성격을 부정할 만한 근거로서 충분치 않고, 고위층 안에서 몽골인이 한인보다 높은 자리에 위치하며, 남인 출신 인사가 근각으로 대우받거나 최고위 관직에 등용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4등인제는 기본적으로 종족 차별 성격이 농후하다. 결론적으로 4등인제가 몽골 정부가 의도적으로 몽골·색목인을 한인·남인보다 우대한 종족 차별 정책이라는 종래 통설은 대체로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다.

참고문헌

1. 사료

- 『經世大典』(周少川·魏訓田·謝輝 輯校, 中華書局, 2020).
 『庚申外史』(權衡, 戴海斌·裘陳江 整理, 上海古籍出版社, 2020).
 『渠菴集』(同恕, 李夢生 校勘, 山西古籍出版社, 2003).
 『金華黃先生文集』(王頌 點校, 『黃潛集』, 浙江古籍出版社, 2013).

- 『牧菴集』(查洪德 校注, 『姚燧集』, 人民文學出版社, 2011).
- 『師山遺文』(鄭玉, 四庫全書本).
- 『雪樓集』(王齊洲·溫慶新 校, 『程鉅夫集』, 湖北人民出版社, 2018).
- 『水東日記』(葉盛, 魏中平 點校, 中華書局, 1980).
- 『王忠文集』(『王禕集』, 浙江古籍出版社, 2016).
- 『元史』(宋濂 編, 中華書局, 1976).
- 『元典章』(陳高華 等 點校, 中華書局·天津古籍出版社, 2011).
- 『滋溪文稿』(蘇天爵, 中華書局, 2008).
- 『椒邱文集』(何喬新, 上海古籍出版社, 1991).
- 『草木子』(葉子奇, 吳東昆 注解, 上海古籍出版社, 2012).
- 『通制條格』(方齡貴 校注, 中華書局, 2001).

2. 논문 및 단행본

- 龔蔭, 「元朝民族等級政治述略」, 『西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科版)』 24-6, 2003.
- 馬聰, 詹政, 「元朝民族分治等級制度論析」, 『北方論叢』 2019-3.
- 蒙思明, 『元代社會階級制度』, 哈佛燕京學社, 1938.
- 船田善之, 「元朝治下の色目人について」, 『史學雜誌』 108-9, 1999.
- 船田善之, 「元代の戶籍制度における色目人」, 『史觀』 143, 2000.
- 船田善之, 「元代 “四階級制” 說のその後: ‘モンゴル人第一主義’ と色目人をめぐって」, 『アジア遊學』 256, 2021.
- 楊富有, 「元代的民族等級制實質及其成因分析」, 『銅仁學院學報』 19-7, 2017.
- 愛宕松男, 「元代色目人に關する一考察」, 『蒙古學』 1, 1937.
- 愛宕松男, 「元朝の對漢人政策」, 『東亞研究所報』 23, 1943.
- 冉守祖, 「從元朝四等級制看民族壓迫的階級實質」, 『中南民族學院學報』 1986-1.
- 吳志堅, 「元代科學的四等人制和地域差異」, 『元史及民族與邊疆研究集刊』 28, 2014.
- 吳鳳霞, 「元代四等人制產生的原因」, 『廊坊師範學院學報』 2001-3.
- 姚繼榮, 「略論元朝仕進制度中的民族歧視政策」, 『青海社會科學』 1996-3.
- 羽田亨, 「元朝の漢文明に對する態度」, 『狩野牧翁受還曆紀念·支那學論叢』, 弘文堂, 1928.
- 劉曉, 「元代司法審判中種族因素的影響」, 『性別·宗教·種族·階級與中國傳統司法』(柳立言 主編),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2013.
- 李大龍, 「淺議元朝的“四等人”政策」, 『史學集刊』 2010-2.
- 箭內互, 「元代社會の三階級」,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3, 1916.
- 丁國范, 「元代的四等人制」, 『文史知識』 1985-3.
- 蔡志純, 「元朝民族等級制度形成試探」, 『民族史論叢』 1, 1987.
- 蔡鳳林, 「論元朝的“四等人制”: 兼論元朝政治文化的若干特徵」, 『內蒙古師範大

- 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37-3, 2008.
- 蔡春娟, 「元朝“四等人制”質疑與新說」, 『中國社會科學報』2022-02-23.
- 胡小鵬, 「元代“色目人”與二等人制」, 『西北師大學報(社會科學版)』50-6, 2013.
- 胡小鵬, 「元代族群認知的演變: 以“色目人”爲中心」, 『西北師大學報(社會科學版)』59-6, 2022.
- 黃二寧, 「元代族群關係再思考: 以“族郡內外制”爲中心」, 『中央社會主義學院學報』2020-1.

(투고일: 2023. 2. 10 심사완료일: 2023. 3. 20 게재확정일: 2023. 3. 22)

고명수

소 속: 충남대학교 사학과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인문대학(W7) 320호

전자우편: tykoon@nate.com

[Abstract]

Reinvestigation into Four-Social-Estate-System's Ethnic Discrimination in Yuan Dynasty

Koh, Myung-Soo

The theory of Four-social-estate-system has been recently criticized a lot. First, there is the argument that Four-social-estate-system did not show the levels of social status but just a ethnic classification. However, the Mongol government intentionally discriminated the four ethnic groups in many ways, for example, in the cases of the appointment of government officials, the examination to select government officials, punishment, and carrying a weapon. Next, there's the argument that the boundaries among the ethnic groups were uncertain and there was no gap in the status between Mongol-Semu people, and between Han-Southern people. Yet, clearly, there was a status gap among the four ethnic groups. Last, there is the argument that Four-social-estate-system meant the discrimination by a class, not by a ethnic group. But, the cases of Han people as a high-ranking officer or Mongol-Semu people in a lower class were very rare. In addition, the cases among the high-ranking officials, Mongol's status was higher than that of Han people and the cases where Southern people failed to be treated as founding contributors or hold the highest position clearly show the ethnic discrimination in Four-social-estate-system.

Key words: Mongol, Four-social-estate-system, Semu people, Han people, Southern people, Founding contributors